

2022학년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 안내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일교차가 큰 계절이니 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포천노곡초등학교는 지식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 일환으로 「2022학년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」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. 학부모님께서 자녀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,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 더불어,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

1. 선행학습의 문제점

- 선행학습 :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·도교육과정,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
- ※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, 교육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.

○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

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음

○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

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,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,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

○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

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(예: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중학교 1학년 내용을 공부하는 학생보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한다는 의식)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실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

○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

21년 보도된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'2020년 초·중·고 사교육비조사 결과'에 따르면 2020년 3-5월, 7-9월 6개월간 초·중·고 사교육비의 총액은 전년대비 11.8% 감소한 9조 2,849억 원입니다. 사교육비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은 전년대비 7.9%p 감소한 66.5%,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.3시간으로 전년대비 1.2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총액이 3조 5,777억 원으로 전체 사교육비 총액의 38.5%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5.2% 감소하였습니다.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일시적 감소추세로 보여지며,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.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경기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서울시,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음. 이렇게 증가한 사교육비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등 '에듀푸어(edupoor)' 양산을 초래하여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2. 공교육정상화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

가.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

-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.
- 「교육기본법」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.
 - ※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.

나.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의 정의

- 선행교육: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·도교육과정,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
- 선행학습: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·도교육과정,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

다. 선행학습 유발 행위란?

-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, 수행평가,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
-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
 - ※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’ (약칭 : 공교육정상화법)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
- 적용 예외
 - ‘영재교육 진흥법’에 따른 영재교육기관(영재학교, 영재학급, 영재 교육원)의 영재교육
 -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
 - 적용 배제 교과: 체육·예술 교과(군), 실과 등
 - 초등학교 1~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: 2019년 3월 26일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적용 예외에 포함됨. 초등학교 1~2학년에서 놀이·활동,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능함.

3.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의 책무

-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교육: 연간 교과지도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정상적 수업활동만으로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함.
-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: 교과협의회, 학년협의회,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학교내 기구들을 활용해 감독함.
- 선행교육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: 교원, 학생, 학부모 대상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함.
-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금지: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한 수업을 금지함.

4. 학부모의 책무

-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(수업공개의 날, 학부모 회의 등)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,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.

2022. 3. 7.

포 천 노 곡 초 등 학 교 장 (직인생략)